

의안 번호	2523	[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2. 4.(목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4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8.(목)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개정(2022.3.1. 시행)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를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(안 제2조)

4. 근거법규
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개정 (2022. 3. 1. 시행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·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임.
- 조례상의 점용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[별표2] ‘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방식’ 과 동일함으로 점용료·사용료의 증감은 없으므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만,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·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의 시행일이 2022. 3. 1.부터 였는데 법령 시행 후 상당기간 지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조치가 늦었다고 판단됨.
- 상위법인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」고 규정되어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 거 법 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공유수면의 관리)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,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관리한다.

1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

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)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·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(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,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“점용료·사용료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·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·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점용·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·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

③ ~ ⑧ (생략)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“점용료·사용료”라 한다)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·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2.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
 - 가. 준설토(浚渫土)를 매립·성토(盛土)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: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
 - 나.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3.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
 - 가.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·배수 펌프의 용량
 - 나.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관·배수관의 지름
4.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: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돌·모래의 시장가격
5.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돌·모래의 시장가격

② 제1항에서 “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”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·하천·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

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·사용계획 및 점용료·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·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.
- ⑤ 점용료·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